

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“통합지원 대상자”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제1항에 따라 <u>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</u></p> <p>다. (생략)</p> 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통합돌봄 지원</u>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9조(통합지원회의)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통합지원 회의</u>를 운영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----- <u>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</u> ----- 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<u>돌봄통합지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9조(통합지원회의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통합지원회의</u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